# (11)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 사업개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지원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 지원대상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분쟁범위)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 □ 지원내용

- (분쟁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 (분쟁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 소송비 등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조정성립 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기술가치평가 비용	조정부가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최대 5,000만원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상시 접수)
-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정·중재 수수료

구 분	신청금액	수수료(부가세 별도)
조 정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원
	10억원 이상	50,000원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원
중 재	1천만원 미만	20,000원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원+신청금액×0.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원+신청금액×0.10%
	10억원 이상	555,000원+신청금액×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원

#### ※ 조정 및 중재 수수료 감면대상

- ①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②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 ③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 □ 지원절차

